

1. 개정이유

개인 출원인에 대한 특허 수수료의 적정 감면한도를 재설정하고, 산업 재산진단기관을 통해 특허분석을 수행하여 연구·개발한 기술을 출원할 경우 지식재산포인트를 부여하는 항목을 신설하며, 특허료·등록료 미납 시 권리 회복의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특허법」, 「실용신안법」 및 「디자인보호법」 개정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납부금액을 정하고, 지식 재산포인트 한시적 부여 기한을 2029년 12월 31일로 연장하며, 특허권 등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의 설정등록료 및 전담기관·전문기관 등의 이전등록료, 질권의 설정등록료, 특허료·등록료의 한시적 감면기간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개인 출원인에 대한 수수료 감면(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한도 축소

- 1) 현 규정 상 개인에 대한 출원료는 20건까지 85%·70% 감경되고, 그 이후로 30% 감경하고 있으며, 심사청구료는 제한없이 85%·70% 감경하고 있으나, 최근 급증하고 있는 AI를 활용한 대량 출원까지 감면 혜택을 적용받는 문제점이 있음
- 2) 개인발명자의 초기 권리화 지원이라는 제도의 취지와 개인당 연간 평균출원건수 등을 고려하여 개인당 85%·70%의 감면 한도를 현 20건에서 10건으로 축소하는 동시에 30% 감면조건을 삭제하고, 심사청구료도 출원료와 동일한 감면 한도 규정 적용

나. 지식재산포인트 부여 및 사용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른 항목 신설

- 1) R&D 성과의 품질 제고를 위해 산업재산진단기관을 통한 특허분석 수행을 민간 차원에서 활성화하는 방안 마련 필요
- 2) 산업재산진단기관을 통해 특허분석을 수행하여 연구·개발한 기술을 출원한 경우로서 지식재산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대한 지식재산포인트 부여 항목 신설

다.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 관련한 회복금액 개정

- 1) 특허료·등록료 미납 시 권리 회복의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특허법」, 「실용신안법」 및 「디자인보호법」 개정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정액 회복료를 정할 필요
- 2) 미납 특허료(등록료)+권리별 정액 회복료를 납부하는 방식으로 징수규칙을 정비하고 정액 회복료를 특허 100만원, 실용신안·디자인 20만원으로 정하고, 특허료·등록료 감면규정을 정액회복료에도 적용

라. 한시적 감면기간 도래에 따른 기간 연장

- 1) 개인 및 중소기업의 특허 창출활동 촉진을 위해 도입된 지식재산포인트의 한시적 부여기한을 2029년 12월 31일로 연장
- 2) 다수 지식재산권 공동담보에 대한 질권 설정등록료와 발명진흥법 제32조의3제1항 및 3항에 따른 전담기관 및 전문기관의 이전등록료, 질권의 설정등록료, 특허료·등록료 한시적 감면규정을 2030년 12월 31일로 연장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재정경제부와 협의 완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 : 2026.10.16.-11.25.(40일)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사전 협의결과 이견없음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일부개정령안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3호의2 단서 중 “2026년 12월 31일”을 “2030년 12월 31일”로 한다.

제3조제2항제3호의2 단서 중 “2026년 12월 31일”을 “2030년 12월 31일”로 한다.

제4조제2항제3호의2 단서 중 “2026년 12월 31일”을 “2030년 12월 31일”로 한다.

제5조제2항제6호의2 단서 중 “2026년 12월 31일”을 “2030년 12월 31일”로 한다.

제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2026년 12월 31일”을 “2029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산업재산진단기관을 통하여 특허분석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활용하여 연구개발한 기술을 특허출원하는 경우로서 지식재산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제8조제10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특허법」 제81조의3제1항, 「실용신안법」 제20조(「특허법」 제81조의3제1항을 준용하는 경우를 말한다) 또는 「디자인보호법」 제84조제

1항에 따라 포기된 특허출원·실용신안등록출원·디자인등록출원 또는 소멸된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의 회복을 신청하려는 자는 추가납부기간의 만료일 또는 보전기간의 만료일 중 늦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특허료,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른 실용신안등록료 또는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른 디자인등록료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더한 금액을 내야 한다.

제8조제10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특허권 회복 수수료의 경우: 100만원
2. 실용신안권 회복 수수료의 경우: 20만원
3. 디자인권 회복 수수료의 경우: 20만원

별표 5의 표의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감경 대상	감경률		
	출원료, 심사청구료, 최초 3년분의 특허료·등록료 및 그 미납에 따른 회복수수료	권리의 설정등록일을 기준으로 한 4년분부터 존속기간까지의 특허료·등록료 및 그 미납에 따른 회복수수료	권리범위확인심판의 청구료

별표 5 제1호의 감경률의 출원료, 심사청구료, 최초 3년분의 특허료·등록료란 중 1. 개인 가. 나. 항목 중 “(출원료는 권리유형별 연간 20건)”을 “(출원료, 심사청구료는 권리유형별 연간 10건)”으로 하고, 다. 항목 중 “(출원료는 권리유형별 연간 20건)”을 “(출원료, 심사청구료는 권리유형별 연간 10건)”으로 한다.

별표 5 비고의 3.을 다음과 같이 한다.

3. 개인(별표 7 제1호에 따른 개인은 제외한다)의 권리유형별(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연간 감경 건수를 산정할 때 무효·반려되거나 1개월 이내에 취하 또는 포기된 것은 제외한다.

별표 6 제2호의 감면기간란 중 “2026년”을 “2030년”으로 하고, 같은 표 제3호의 감면기간란 중 “2026년”을 “2030년”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개정규정은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제7조의 2 제4호의 개정규정 : 2026년 12월 28일
 2. 제8조제10항, [별표5]의 표의 제목을 개정하는 규정 : 2027년 3월 16일
- 제2조(포인트 부여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 2 제4호의 개정규정은 시행일부터 출원되는 특허출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회복에 관한 적용례) 제8조 제10항, 별표5의 표제목의 개정규정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추가 납부기간 또는 보전기간이 만료되는 건 부터 적용한다.

제4조(개인 출원인의 출원료, 심사청구료 감면한도에 관한 적용례) 별표 5의 개인에 대한 출원료, 심사청구료 감면한도 규정 및 비고3의 개정규정은 개정규정 시행 후 특허·실용신안·디자인을 출원한 건부터 적용

하며, 연간감경건수는 신청순서대로 산정한다.

제5조(회복에 관한 경과조치) 제8조 제10항, 별표5의 표제목의 개정규정 시행 전에 추가납부기간 또는 보전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같은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개인 출원인의 심사청구료 감면한도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5의 개인에 대한 심사청구료 감면한도 개정규정은 개정규정 시행전에 출원된 건에 대하여는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특허료 및 특허 관련 수수료) ① (생 략)	제2조(특허료 및 특허 관련 수수료) ① (현행과 같음)
② 「특허법」 제7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특허료 및 그 밖의 특허등록 관련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 -----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3의2. 특허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의 설정등록료: 매건 2만원. 다만, <u>2026년 12월 31일</u> 까지 공동담보인 특허권이 6건을 초과하는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건마다 1만원으로 한다.	3의2. ----- ----- --. --- <u>2030년 12월 31일</u> --- ----- ----- ----- -----.
4. ~ 10. (생 략)	4. ~ 10.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3조(실용신안등록료 및 실용신안 관련 수수료) ① (생 략)	제3조(실용신안등록료 및 실용신안 관련 수수료) ① (현행과 같음)
② 「실용신안법」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실용신안등록료 및 그 밖의 실용신안등록 관련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 -----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3의2. 실용신안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의 설정등록료: 매건 2만원. 다만, <u>2026년 12월 31일까지</u> 공동담보인 실용신안권이 6건을 초과하는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건마다 1만원으로 한다. 4. ~ 10. (생략) ③ (생략) 제4조(디자인등록료 및 디자인 관련 수수료) ① (생략) ② 「디자인보호법」 제79조에 따른 디자인등록료(관련디자인등록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그 밖의 디자인등록 관련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 3. (생략) 3의2. 디자인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의 설정등록료: 매건 2만원. 다만, <u>2026년 12월 31일까지</u> 공동담보인 디자인권이 6건을 초과하는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건마다 1만원으로 한다. 4. ~ 8. (생략) ③ (생략)	3의2. ----- ----- ---. ----- <u>2030년 12월 31일</u> ----- ----- ----- -----. 4. ~ 10.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제4조(디자인등록료 및 디자인 관련 수수료) ① (현행과 같음) ②----- ----- ----- -----. 1. ~ 3. (현행과 같음) 3의2. ----- ----- --. ----- <u>2030년 12월 31일</u>-- ----- ----- -----. 4. ~ 8.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	---

제5조(상표등록료 및 상표 관련
수수료) ① (생 략)

② 「상표법」 제72조에 따른 등
록료 및 그 밖의 상표등록 관련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 6. (생 략)

6의2. 상표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의 설정등록료: 매건 2만
원. 다만, 2026년 12월 31일까
지 공동담보인 상표권이 6건
을 초과하는 신청이 있는 경
우에는 그 초과하는 건마다 1
만원으로 한다.

7. ~ 13. (생 략)

③ (생 략)

제7조의2(지식재산포인트의 부여
· 사용 및 환수) ① 지식재산처
장은 특허권자, 실용신안권자,
디자인권자 또는 상표권자가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경우에는 지식재산처장이 정
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지식
재산포인트를 부여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의 경우에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지식재산포인트
를 부여한다.

제5조(상표등록료 및 상표 관련
수수료) ① (현행과 같음)

②-----

-----.

1. ~ 6. (현행과 같음)

6의2. -----

---. --- 2030년 12월 31일---

-----.

7. ~ 13.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제7조의2(지식재산포인트의 부여
· 사용 및 환수) ① -----

----- 2029년
12월 31일-----
-----.

1. ~ 3. (생략)

<신설>

② 삭제

③·④ (생략)

제8조(납부방법 등) ① ~ ⑨ (생략)

⑩ 「특허법」 제81조의3제3항, 「실용신안법」 제20조(「특허법」 제81조의3제3항을 준용하는 경우를 말한다) 또는 「디자인보호법」 제84조제3항에 따라 소멸한 특허권·실용신안권 또는 디자인권을 회복하려는 자는 제8항 단서 또는 제9항 본문의 규정에 따른 기간의 만료일 부터 3월 이내에 특허료 또는 등록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1. ~ 3. (현행과 같음)

4. 산업재산진단기관을 통하여 특허분석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활용하여 연구개발한 기술을 특허출원하는 경우로서 지식재산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③·④ (현행과 같음)

제8조(납부방법 등) ① ~ ⑨ (현행과 같음)

⑩ 「특허법」 제81조의3제1항, 「실용신안법」 제20조(「특허법」 제81조의3제1항을 준용하는 경우를 말한다) 또는 「디자인보호법」 제84조제1항에 따라 포기된 특허출원·실용신안등록출원·디자인등록출원 또는 소멸된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의 회복을 신청하려는 자는 추가납부기간의 만료일 또는 보전기간의 만료일 중 늦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특허료,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른 실용신안등록료 또는 제4조제2항제1호에

1. <u>특허권 회복의 경우: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특허료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u> 2. <u>실용신안권 회복의 경우: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른 실용신안등록료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u> 3. <u>디자인권 회복의 경우: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른 디자인등록료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u> ⑪ ~ ⑳ (생략)	<u>따른 디자인등록료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더한 금액을 내야 한다.</u> 1. <u>특허권 회복 수수료의 경우: 100만원</u> 2. <u>실용신안권 회복 수수료의 경우: 20만원</u> 3. <u>디자인권 회복 수수료의 경우: 20만원</u> ⑪ ~ ⑳ (현행과 같음)
---	---

■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별표 5] <개정 2027. 1. 1.>

특허료, 등록료 및 수수료의 감경(제7조제1항제2호 관련)

감경 대상		감경률		
		출원료, 심사청구료, 최초 3년분의 특허료·등록료 및 그 미납에 따른 회복수수료	권리의 설정등록일을 기준으로 한 4년분부터 존속기간까지의 특허료·등록료 및 그 미납에 따른 회복 수수료	권리범위확인심판의 청구료
1. 개인	가. 19세 이상 29세 이 하인 사람	100분의 85 (출원료는 권리유형별 연간 20건) ↓ 100분의 85 (출원료, 심사청구료는 권리유형별 연간 10건)	100분의 50	100분의 70
	나. 65세 이상인 사람			
	다. 가목 및 나목의 사 람을 제외한 개인	100분의 70 (출원료는 권리유형별 연간 20건) ↓ 100분의 70 (출원료, 심사청구료는 권리유형별 연간 10건)		
2.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 항에 따른 중소기업		100분의 70		100분의 50
3.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 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에 따른 전담조직(법인인 경 우로 한정한다)		100분의 50		
4.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연구 기관				
5. 지방자치단체			-	
6.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 에 관한 법률」 제35조의2제6 항에 따른 기술신탁관리기관		-	100분의 70	

7.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과 중소기업이 아닌 자의 공동연구결과물 출원	100분의 50	-
8.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중견기업	100분의 30	100분의 30 (4년분부터 9년분까지)

비고

1.~2 생략

3. 개인(별표 7 제1호에 따른 개인은 제외한다)의 권리유형별(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연간 감경 건수를 산정할 때 무효·반려되거나 1개월 이내에 취하 또는 포기된 것은 제외하며, 출원 건수가 연간 20건을 초과하는 권리에 대한 출원인 경우 출원료의 100분의 30을 감경한다. 한다.

4. ~ 8. 생략

[■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별표 6] <개정 2027. 1. 1.>

특허료, 등록료 및 수수료의 한시적 감면(제7조제1항제3호 관련)

감면대상		감면율	감면기간
1. 생략			
2. 이전등록료, 질권의 설정 등록료	「발명진흥법」 제32조의3제1항에 따른 전담기관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전문기관(특허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업수행기관을 포함한다)	면제	<u>2026년 12월 31일까지</u> 신청서를 제출한 건 ↓ <u>2030년 12월 31일까지</u> 신청서를 제출한 건
3. 특허료 · 등록료	가. 나. 생략		
	다. 「발명진흥법」 제32조의3제1항에 따른 전담기관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전문기관(특허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업수행기관을 포함한다)	면제	납입개시일이 <u>2026년 12월 31일까지인 건</u> ↓ 납입개시일이 <u>2030년 12월 31일까지인 건</u>

비고 (생략)